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1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특수업무수당) 관련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의
특정업무수행수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분 | 지급방법 및 금액 | 지급대상 |
|--------------|---|--------------|
| 특정업무 수행수당 |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안전·보건관리업무 : 월80,000원 | 팀장 및 실무담당 직원 |

제50조(비상임인원의 보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비상임 임원이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의 여비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